KB 주택구입자금대출(집단 입주잔금 대출)

상품특징

•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예정으로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려는 고객을 위한 맞춤상품

대출신청자격

• 은행이 승인한 사업장의 입주예정자('무보증취급 후 후취담보 취득' 방식은 수분양자 본인이 입주하는 경우만 가능)

대출금액

• 소요자금의 100% 이내(사업장별 승인한도 범위 내)

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

- 최저 1년 이상 최장 40년 이내(비거치 또는 거치기간 1년 운용)
- 원(리)금균등 분할상환

금리 및 이율리스트 펼치기

대출금리

• 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(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)

중도상환수수료

• 중도상환수수료 : 중도상환원금 × 수수료율(0.58%) × 잔존일수 ÷ 대출기간(최장 3년까지 부과)

연체이자(지연배상금)에 관한 사항

- (1) 연체이자율: 최고 연 15% (차주별 대출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)
- * 단,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+ 연 2.0%p
- ☞ 『연체가산이자율』은 연 3%를 적용합니다.
- (2)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를 내셔야 하는 경우
- ☞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
 -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

적용되고,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
- ☞ 「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기로 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- 분할상환금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(또는 분할상환원리금)에 대한 연체이자를,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.

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

•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.

대출계약철회권

- 계약서류 수령일, 계약 체결일,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(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까지 은행에 서면, 전화,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,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: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·대출만기 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위법계약해지권

- 은행이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적합성,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,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·계약체결일·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이내에 서면, 전화,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

이용조건리스트 펼치기

담보

• 무보증취급 후 후취담보 취득(대출대상 물건이 준공된 때 해당 물건에 대해 1순위 근저당권 설정)

부대비용

•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(1) 인지세: 「인지세법」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, 각 50%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(2) 보험료우선변제보증금 차감생략을 위한 모기지보험의 서울 보증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

대출금액	5천만원 이하	5천만원 초과~1억 원 이하	1억원 초과~10억 원 이하	10억원 초과
인지세액	비과세	7만원(각각 3만5 천원)	15만원(각각 7만5 천원)	35만원(각각 17만 5천원)

대출상환 관련 안내

- 이자 계산 방법 :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(윤년은 366)로,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.
-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*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「상품안내」의 "대출기간 및 상환방법"을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.(1) 일시상환대출: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,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.(2) 원리금균등 분할상환: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.(3) 원금균등 분할상환: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.(4) 할부금고정 분할상환: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,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.(5) 혼합상환: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,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.(6) 통장자동대출: '매일의 잔액'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 납입일(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)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.
- 휴일 대출 상환: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.(단,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)

기한연장 관련 안내

• 분할상환방식 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.

유의사항 및 기타리스트 펼치기

만기 경과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

-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, 은행여신거래기 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.
-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, 연체기간에 따라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과 『일 반신용정보 관리규약』에 의거 "연체정보 등"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
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

구분	변경전	변경후	기존고객적용여부
중도상환수수료 (2025.01.13)	-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(1.0%) x 잔존일수 ÷ 대출기간 (최장 3년까지 부과, 대출개시일	- 중도상환수수료 : 중도상 환원금 x 수수료율	미적용

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

• 2025.01.13~2026.06.30

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

-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,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.
- 수입인지대금은 각 50%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,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 하여 발생하는 비용(등록면허세, 지방세,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)은 은행이 부담 하고,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/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 다.
-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-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,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, 우대금리 제공 조건 충족여부,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(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)이거나 은행의 신 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이자는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지급일에 대출상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. 일시 상환(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) : 일단위 일계산 후취, 분할상환 : 월단위 월계산 또는 월단위 일계산 후취
-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,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, 분할상환원(리)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. 또한,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 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,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(P)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고객센터(歸1588-9999)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 (www.kbstar.com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 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이 안내장은 은행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 고자료이며,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,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.

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(www.kbstar.com : 전체서비스 \rightarrow 고객센터 \rightarrow 서식/약관/ 설명서)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.

[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6049-81호(2025.01.06)]

필요서류

• 본인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)분양계약서 원본(조합원인 경우 기존주택 권리증 추가 필요)인감증명서(인감도장 포함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포함)재직관련서류(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등)소득관련서류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)기타 필요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미성년자 자녀 기본증명서(상세) 등 필요시)※ 발급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간편서류제출이 불가한 경우 해당서류도 준비하셔야 합니다.